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617
------------	------

2021년 8월 3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정지권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라.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1년 8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권 의원)

가. 제안이유

-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운행할 수 없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 및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절차를 따름(안 제8조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20. ~ 2021. 8. 27.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원안가결

- 공항버스는 시내·마을버스와는 달리 필수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나, 공항 이용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위기극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 따라서 이례적 재난상황시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용자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한정면허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재난 상황으로 인해 이용객 감소 및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손실이나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나.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대중교통 분야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임

-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승객수는 전년대비 각각 22.7%, 27% 감소하였고, 운송수입금 또한 각각 22.4%(△2,758억원), 26.5%(△635억원) 감소¹⁾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 노선이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버스업체 운영이 힘든 상황임
- 특히, 공항버스의 경우 항공편이 막히고 여행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년 총 수송인원은 212만명으로 '19년 1,454만명 대비 85.4%(△1,242만명)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운임수입은 '19년 1,571억원에서 '20년 225억원으로 85.7%(△1.346억원) 감소 되는 등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 중 가장 큰 손실을 입고 있음

※ 참고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운임수입 감소

구 분		소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승객수 (천명)	2019년	1,920,919	1,479,364	427,017	14,538
	2020년	1,457,499	1,143,752	311,629	2,118
	감소	463,420(△24.1%)	335,612(△22.7%)	115,388(△27%)	12,420(△85.4%)
수 입 (억원)	2019년	16,284	12,321	2,392	1,571
	2020년	11,546	9,564	1,757	225
	감소	4,738(△29.1%)	2,758(△22.4%)	635(△26.5%)	1,346(△85.7%)

- 서울시는 공항버스 업계의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2월,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수송차량을 10대 운영하고 서울시 전체 6개 노선 12대를 최소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특별수송 차량 6대²⁾, 3개 노선 7대³⁾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1) 서울시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서울버스 승객 24%↓...공항버스는 최대 99.1% 줄어 폐선위기」, 2021.2.10.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한국도심공항 코로나19 관련 특별수송대책) 변경통보, 버스정책과-11942(2021.4.16.)
- 특별수송대책 운행차량 : 6대(예비차량 2대)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방역 및 손실 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공항버스는 별도의 지원 대책에 포함된 바 없고

공항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서울시와 국비를 통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으나⁴⁾, 공항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참고 : 서울시 도시교통실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				비고	
	1회	2회	3회	4회		
총 계	14,317	7,404	40,495	18,947		
지하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931	-	2,726	13,568	방역비 및 운영비 지원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 운영관리	279	-	432	1,964	
	우이신설 도시철도 재정지원	141	-	289	2,530	
	1~8호선 코로나19 대응지원	3,923	-	15,611	885	방역비 및 임대료 지원
버스	버스분야 감염예방대책	9,043	-	10,437	-	방역비 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	-	11,000	-	운영비 지원
택시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	7,404	-	-	운영비 지원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5)에

3) 공항버스 운행계통(3개 노선 7대, 2021. 07. 05. 현재)

- 6100번 2대, 6101번 4대, 6009번 1대 운영

4)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25개구, 1조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민생경제의 봄 앞당긴다」, 2021.3.22.

- 운수종사자 지원(시비 100%) :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기사 1인당 50만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 재난지원금 지급...8. 23~9. 3 신청접수」, 2021.8.16.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전액 국비로 지원)

따른 재난 등의 사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한정 면허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버스 업계의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의 감염병 외에도 다수의 감염병⁶⁾과 자연재난은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까지 포함하고 있어 재정지원 근거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자금 보조는 다른 한정면허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보조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따른”을 “따른 보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